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직원들이 경쟁법의 준수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HD한국조선해양(이하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준수는 회사에 적용되는 경쟁관련 법령, 규정 등에서 정한 요건을 자율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
2. 경쟁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경쟁의 촉진과 공정거래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되는 제반법규를 말한다.
3. 경쟁당국은 경쟁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말한다.
4. 자율준수프로그램은 자율준수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행동요소와 실행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5.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제 2 장 조직구조 및 업무분장

제1절 자율준수관리자

제4조(선임과 해임)

1. 자율준수관리자는 이사회에서 위촉하는 자로 한다.
2. 자율준수관리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되지 아니하며, 해임을 하는 경우에는 해임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3. 자율준수관리자가 해임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새로운 자율준수관리자를 선임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권한)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점검, 조사권
2. 경쟁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개선, 시정 요구권
3.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출 요구권
4.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

제6조(의무)

자율준수관리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2.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의무

제7조(직무)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
2. 자율준수와 관련된 계획 수립
3.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점검을 반기 1회 이상 실시
4. 점검결과에 대한 인사위원회 상정 및 시정요구
5. 기타 경쟁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개선 및 시정 요구
6. 자율준수규정에 대한 임직원 교육
7. 자율준수행동강령의 제정 및 운영
8. 자율준수 활동결과에 대한 기록유지
9. 자율준수 활동계획과 활동상황에 대한 대표이사 및 이사회 보고
10. 경쟁당국 등과의 협조 및 지원
11.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인사상 불이익 부과금지)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 업무집행의 객관성,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당해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회사의 지원)

1.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2. 자율준수관리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전담부서)

회사 전체의 자율준수업무는 컴플라이언스팀에서 주관하며, 컴플라이언스팀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수행을 보조한다.

제2절 자율준수협의회

제11조(설치 및 구성)

1. 자율준수관리자는 자문기구로서 관련 부서장으로 구성된 자율준수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2. 자율준수협의회 의장은 자율준수관리자가 한다.
3. 자율준수협의회 구성원은 사안에 따라 자율준수관리자가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역할)

자율준수협의회는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준수의 기본방침 설정
2. 중요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자문

제3절 임직원

제13조(의무)

1. 모든 임직원은 경쟁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경쟁법 위반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자문 또는 협의를 받아야 한다.

3.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은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쟁법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

제14조(자율준수편람)

1. 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법 자율준수를 위한 세부 지침인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2. 자율준수편람은 회사의 조직과 특성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 및 규정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 내용을 지체 없이 자율준수편람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모니터링 제도)

자율준수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준수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확인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임직원의 자율준수실태 등에 대한 점검, 조사
2. 자율준수관리자의 요구에 의하여 각 부서별로 작성한 각종 체크리스트의 검토 및 확인
3. 자율준수관리자의 요구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보고서, 각종 자료의 검토 및 확인

제16조(교육프로그램의 실시)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 규정과 관련하여 임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보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경쟁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에게는 반기당 2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교육내용은 자율준수 규정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거나, 경쟁법령의 개정에 따라 임직원이 인지하여야 할 사항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들로 한다.
3. 자율준수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자율준수관리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경쟁법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1. 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법 준수여부 점검결과 적발된 경쟁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재의 종류와 절차는 인사규

정 및 취업규칙에 따른다.

2. 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당해 임직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임직원의 포상)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의 자율준수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해당 임직원을 포상하거나 승진을 건의할 수 있다.

제19조(문서관리)

1. 자율준수에 관한 기본 문서들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아래 분류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2. 법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는 추후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작성, 보관되어야 한다.
3. 자율준수 활동에 관한 모든 문서는 정확하게 기록되고 최신의 정보를 담아야 한다.

제20조(운영성과 평가)

1. 자율준수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운영성과 평가는 자율준수관리자가 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21조(공시)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용상황을 회사 홈페이지, 또는 보고서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경쟁당국과의 관계)

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보교환, 의사소통 등을 원활하게 하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3조(위임)

자율준수관리자는 이 규정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별도로 제정,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시기) 이 규정은 2004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재) 자율준수프로그램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임직원은 징계한다.

제3조(자문) 경쟁법 관련 업무를 해석하거나 이행함에 있어서 의문이 생기면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자율준수협의회와 상의하고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사내 다른 규정과의 관계) 자율준수 규정은 회사 내 다른 규정보다 우선한다.

부 칙 (2014. 2. 6.)

제1조(시행시기) 이 규정은 2014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7. 26.)

제1조(시행시기) 이 규정은 2024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대분류명 Classification	표준번호 Standard Number	개정차수 Revision Number
	경영기본	KSOES-AA-1907	1
표 준 명 Name of Standard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세칙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본 세칙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 및 공정거래와 관련된 모든 업무활동에 적용된다.

2. 목 적

본 세칙은 주식회사 HD 한국조선해양(이하 "회사")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공정거래 자율준수"는 임직원이 회사에 적용되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자율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이하 "자율준수"라 한다).
- (2) "공정거래 관련 법령"이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규정의 경쟁법을 의미하며 공정거래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보호법률 등 경쟁의 촉진과 공정거래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되는 제반법령을 말한다.
- (3)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이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교육, 감독 등 회사 내부의 준법시스템과 자율준수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행동요소와 실행방안을 제시한 것을 말한다(이하 "CP"라 한다).
- (4) "자율준수관리자"란 CP의 운영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 (5) "CP 전담부서"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지휘 아래에서 CP 업무를 주관하여 실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대분류명 Classification	표준번호 Standard Number	개정차수 Revision Number
	경영기본	KSOES-AA-1907	1
표 준 명 Name of Standard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세칙		

제 2 장 조직구조 및 업무분장

4. 자율준수관리자

4.1 자율준수관리자의 선임과 해임

- 4.1.1 자율준수관리자는 이사회에서 위촉하고 사내외 이해관계자에게 공지되어야 한다.
- 4.1.2 자율준수관리자가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행위에 관여되어 있어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해임할 수 있으며 임직원과 사내외 이해관계자에게 공지되어야 한다.
- 4.1.3 자율준수관리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4.1.2 항에 따라 해임되는 경우 CP 전담부서장이 자율준수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또는 이사회의 의결로 새로 선임될 때까지 업무를 대행한다.

4.2 자율준수관리자의 독립성 보장

- 4.2.1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가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 4.2.2 자율준수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고, 업무수행 중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업무수행 행위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 4.2.3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 업무수행의 객관성과 독립성의 확보를 위하여 자율준수관리자가 4.2.2 항을 위반한 경우가 아닌 이상, 당해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 4.2.4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임직원은 자율준수관리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4.2.5 회사는 본 세칙 및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문제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자율준수관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최대한 존중한다.

	대분류명 Classification	표준번호 Standard Number	개정차수 Revision Number
	경영기본	KSOES-AA-1907	1
표 준 명 Name of Standard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세칙		

4.3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
- (2) 자율준수와 관련된 계획 수립
- (3)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점검을 반기 1회 이상 실시
- (4) 점검결과에 대한 인사위원회 상정 및 시정요구
- (5) 기타 경쟁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개선 및 시정 요구
- (6) 자율준수규정에 대한 임직원 교육
- (7) 자율준수행동강령의 제정 및 운영
- (8) 자율준수 활동결과에 대한 기록유지
- (9) 자율준수 활동계획과 활동상황에 대한 대표이사 및 이사회 보고
- (10) 경쟁당국 등과의 협조 및 지원
- (11)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4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점검, 조사권
- (2) 경쟁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이사회 보고 및 개선, 시정 요구권
- (3)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출 요구권
- (4)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

5. CP 전담부서

5.1 조직의 구성

5.1.1 자율준수관리자는 원활한 CP 운영을 위하여 자율준수관리자 직속의 CP 전담부서 조직을

	대분류명 Classification	표준번호 Standard Number	개정차수 Revision Number
	경영기본	KSOES-AA-1907	1
표 준 명 Name of Standard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세칙		

구성하여야 한다.

- 5.1.2 CP 전담부서의 점검업무 수행자는 입사 2 년 이상자로서 점검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지식 및 경험을 갖춘 자로 보임함을 원칙으로 한다.
- 5.1.3 전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CP 전담부서 직원으로 보임할 수 없다.
- (1)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2)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 (3) 기타 자율준수관리자가 부적격자로 인정한 자
- 5.1.4 CP 전담부서의 직원의 보직 및 전보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요청에 의한다.
- 5.1.5 CP 전담부서의 직원은 법령위반 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상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5.2 조직의 역할

- 5.2.1 CP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1)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보좌
 - (2) CP의 실행에 필요한 계획 작성, 자율준수관리자 보고 및 시행
 - (3) CP 운영상의 실무적인 문제처리 및 CP 운영효과성 평가
 - (4) 공정거래 관련 법령과 연관된 사내업무에 대한 법률자문 등 지원활동
 - (5)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 대한 정보수집 및 전파
 - (6)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자율준수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주관
 - (7) 자율준수편람의 작성 및 배포
 - (8) 공정거래 관련 반기 1회 모니터링 및 점검
 - (9) 공정거래 모니터링 프로세스 및 시스템 개발

	대분류명 Classification	표준번호 Standard Number	개정차수 Revision Number
	경영기본	KSOES-AA-1907	1
표 준 명 Name of Standard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세칙		

6. 임직원

6.1 임직원의 의무

- 6.1.1 모든 임직원은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6.1.2 모든 임직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율준수관리자에 자문을 요청하거나 협의하여야 한다.
- 6.1.3 모든 임직원은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사항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자율준수관리자에 알려야 한다.

7. 대표이사

7.1 대표이사의 역할

- 7.1.1 자율준수관리자의 효과적인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회사의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7.1.2 임직원의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을 보고받을 경우 재발방지를 위한 업무절차 개선 등을 지시하고 필요시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제 3 장 CP의 운영

8. 자율준수 의지선언

대표이사는 임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CP 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율준수 의지를 선언하여야 하며, 이는 회사의 이해관계자에게 공지되어야 한다.

9. 자율준수편람

- 9.1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들이 실제 업무수행의 세칙서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율준수편람을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대분류명 Classification	표준번호 Standard Number	개정차수 Revision Number
	경영기본	KSOES-AA-1907	1
표 준 명 Name of Standard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세칙		

9.2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회사의 규정 등의 변경이 있을 시 관련 내용을 신속하게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에 반영하고 이를 임직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9.3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을 임직원들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주기적인 개정 검토(매월) 및 개정(반기 1 회)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교육

10.1 CP 전담부서는 임직원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 (1)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 등 대상 교육
- (2) 공무, 공사, 관리, 안전 등 현장 관리자 및 담당자 교육
- (3)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에 대한 교육
- (4)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보충교육 및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자에 대한 특별교육
- (5) 기타 직원들의 공정거래 준수 마인드 제고를 위해 필요한 교육
- (6) 대면, 온라인, 동영상, 업무시스템 게시 및 팝업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

10.2 CP 전담부서는 교육별 의무 수강부서를 선정하여 이를 공지할 수 있으며 교육 후 수강현황을 부서장에게 통보토록 한다

10.3 CP 전담부서로부터 교육 대상으로 선정된 부서의 임직원들은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미이수한 임직원 중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자는 가중된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10.4 CP 전담부서는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0.5 CP 전담부서는 교육 후 피교육자의 이해도, 만족도, V.O.C, 참석율 등의 파악을 통해 교육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교육에 반영한다.

10.6 CP 전담부서는 교육의 대상, 내용 등을 고려하여 강사를 선정하며, 전문강사의 자격은 법무법인, 전문기관 등에서의 공정거래 관련 업무경력 2 년 이상,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대분류명 Classification	표준번호 Standard Number	개정차수 Revision Number
	경영기본	KSOES-AA-1907	1
표 준 명 Name of Standard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세칙		

일반강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1) 시공관리, 제작관리, 구매 등의 공정거래 관련 업무경력 2년 이상
- (2) CP 전담부서 업무경력 1년 이상 또는 컴플라이언스 경영전문가(CCP) 2급 이상 자격 소지
- (3) 사외 공정거래 전문교육기관 강의 수료 1회 이상

11. 문서의 관리

11.1 공정거래 관련 법령과 관련된 업무 수행 시 발생된 모든 문서는 3년 간 보관되어야 한다.

11.2 본 규정 외의 사항은 사내 문서관리세칙에 따른다.

12. 위험성평가

12.1 CP 전담부서는 부서별 업무에 대한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리스크를 평가하고, 적합한 통제를 통해 법 위반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12.2 위험성 평가는 분기 1회 실시하고, 리스크 등급은 상, 중, 하 3단계로 구분한다.

12.3 리스크 등급이 '중' 등급 이상의 경우 적절한 통제방안을 강구하여 해당 리스크를 회피, 경감 또는 제거한다.

13. 모니터링 및 점검

13.1 CP 전담부서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령과 관련한 모니터링 및 점검을 실시하여 법 위반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13.2 CP 전담부서는 리스크가 높거나 자율점검이 부진한 부문 및 부서에 대해 상시 공정거래 모니터링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3.3 수감부서는 CP 전담부서의 모니터링 및 점검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를 가진다.

13.4 CP 전담부서는 모니터링 및 점검 결과를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경영층에 보고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대분류명 Classification	표준번호 Standard Number	개정차수 Revision Number
	경영기본	KSOES-AA-1907	1
표 준 명 Name of Standard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세칙		

업무절차개선 등을 취할 수 있다.

13.5 점검을 수행하는 자는 시공관리, 제작관리, 구매 등의 공정거래 관련 업무를 2 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13.6 CP 전담부서 직원은 모니터링 및 점검을 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점검하여야 한다.
- (2)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적 점검 기준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 (3)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기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거나 도용할 수 없다.
- (4) 모니터링 및 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점검대상자 또는 부서의 업무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점검대상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근무 시간 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5) 모니터링 및 점검과정에서 권위적 · 고압적인 자세를 지양하고,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며, 우수사례 발굴에도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6) 점검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14. 제보시스템의 운영

14.1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사실 또는 잠재적 위반가능성을 발견할 경우 이를 제보할 수 있도록 제보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보된 내용에 대해 점검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4.2 제보시스템은 기명제보 뿐만 아니라 익명제보도 가능하도록 운영한다. 익명제보는 철저히 익명성을 보장한다.

14.3 자율준수관리자는 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제 3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제보자가 제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5. 하도급거래 분쟁조정

15.1 분쟁조정기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며,

	대분류명 Classification	표준번호 Standard Number	개정차수 Revision Number
	경영기본	KSOES-AA-1907	1
표 준 명 Name of Standard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세칙		

분쟁조정기구의 구성 및 운영은 CP 전담부서에서 담당한다.

- (1) 분쟁조정기구는 하도급거래 분쟁 접수 시, 자율준수관리자를 위원장으로 하여, 위원장 포함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 (2) 분쟁조정기구는 관련 사실관계 조사 및 의견청취를 통해 해당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정권고안을 포함한 분쟁에 대한 의견(이하 '조정권고안')을 분쟁 관련 부서에 통지한다.
- (3) 분쟁 관련 부서는 조정권고안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분쟁사안을 종결하며 그 결과를 분쟁조정기구와 CP 전담부서 공유한다.
- (4) 분쟁조정기구는 하도급거래 분쟁사안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종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나 검토가 필요할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5) CP 전담부서는 분쟁조정기구의 분쟁조정 실적과 그 내용을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한다.

16. 공시

16.1 자율준수관리자는 CP의 운영상황을 대내외에 자진 공시하여야 한다.

17. 운영평가

17.1 자율준수관리자는 CP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반기 1회 평가하여 그 결과를 경영층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CP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17.2 운영평가에는 주요 법령의 비준수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17.3 운영평가자는 CP 전담부서에서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또는 컴플라이언스 경영전문가(CCP) 2급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로 한정하고 필요 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18.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18.1 제재조치 요구

18.1.1 본 운영세칙 및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위반사실을 인지한 부서

	대분류명 Classification	표준번호 Standard Number	개정차수 Revision Number
	경영기본	KSOES-AA-1907	1
표 준 명 Name of Standard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세칙		

책임자가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CP 전담부서로 즉시 알려야 한다.

18.1.2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CP 전담부서는 회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인사업무 담당부서에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8.2 제재의 원칙과 절차

18.2.1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CP 전담부서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임직원 또는 조직에 대해 주의 또는 경고를 요구할 수 있다.

18.2.2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CP 전담부서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임직원 또는 조직에 대해 인사위원회 회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사안에 대해 인사위원회는 제재조치 결과를 자율준수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8.2.3 제재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취업규칙 및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법령 위반자에 대한 특별교육 등 CP 전담부서의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수준이 가중될 수 있다.

18.2.4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자에 대한 본 세칙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인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8.3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18.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전·현직 임직원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나 시정조치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경쟁법 위반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

(2)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조사 및 심의·의결(이하 '조사등'이라 함)에 협조한 자

18.3.2 18.3.1 항에 따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조치 및 시정조치를 모두 면제한다.

(1) 경쟁법 위반행위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일 것

	대분류명 Classification	표준번호 Standard Number	개정차수 Revision Number
	경영기본	KSOES-AA-1907	1
표 준 명 Name of Standard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세칙		

- (2) 회사가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거나 이를 입증하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신고했거나 조사등에 협조했을 것
- (3) 경쟁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등이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했을 것
- (4) 그 경쟁법 위반행위를 중단했을 것

18.3.3 18.3.1 항에 따라 제재조치나 시정조치를 감경 또는 면제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감경 또는 면제를 취소할 수 있다.

- (1) 회사의 조사등의 과정에서 한 진술이나 제출했던 자료의 중요한 내용을 경쟁당국의 조사 또는 재판에서 전부 또는 일부 부정하는 경우
- (2) 회사의 조사등의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이나 제출했던 자료가 경쟁당국의 조사 또는 재판에서 거짓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 (3) 정당한 이유 없이 경쟁당국의 조사 또는 재판에서 경쟁법 위반행위 사실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는 경우
- (4) 정당한 이유 없이 경쟁당국의 조사 또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 (5) 자진신고한 경쟁법 위반행위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19. 임직원 포상

19.1 자율준수관리자는 CP 를 성실하게 실천하였다고 평가된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인사업무 담당부서에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 (1) CP 점검 우수 조직
- (2) 공정거래 실천 우수자

19.2 공정거래 실천 우수자 선정기준은 [별첨 1]을 따르며, 자율준수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대분류명 Classification	표준번호 Standard Number	개정차수 Revision Number
	경영기본	KSOES-AA-1907	1
표 준 명 Name of Standard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세칙		

20. 기타

- 20.1 자율준수관리자와 CP 전담부서는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보교환, 의사소통 등을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 20.2 자율준수관리자는 회사 내부 절차에 의거 CP 시행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 20.3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세칙은 연 1 회 개정하며, 공정거래 관련 법령 개정,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정 횟수를 늘리거나 개정하지 않을 수 있다.

[별첨 1] 공정거래 실천 우수자 선정기준

	대분류명 Classification	표준번호 Standard Number	개정차수 Revision Number
	경영기본	KSOES-AA-1907	1
표 준 명 Name of Standard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세칙		

[별첨 1] 공정거래 실천 우수자 선정기준

구분	평가요소		배점 (점)	단위	비고
정량 평가	가점 요소	공정거래 실천리더	30	-	실천리더 선임 기록 확인
		공정거래 관련 업무 자체점검 및 기타 활동(캠페인, 행사, 간담회 등)	10	건	최대 40 점, 결과보고서 등 확인
		공정거래 교육 이수율	0.1	%	최대 20 점, 부서 교육훈련기록 등 확인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 자진시정	5	건	최대 10 점, 결과보고서 등 확인
		공정거래 관련 사전 협의	1	건	최대 10 점, 법무지원시스템, 이메일 등 사전협의 기록 확인
	감점 요소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	-20	건	공정위 처분 통지
			-10	건	제보, 감사 등 적발
정성 평가	정량평가에서 동점인 경우, 정량평가 내용,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				자율준수관리자 결정